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18.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9. 12. 3)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안 동 수)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등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 현행 조례 제4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 폐지
 - 현행 조례 제16조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 직접 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폐지
 - 현행 조례 제17조 전쟁기념사업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 사업종사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폐지
- 관련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 안 제2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
- 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 중 일부 정비(안 제5조)

- 제2호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제외
- 제3호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외
- 제4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제외
- 농협중앙회 감면을 조정
 - 현행 조례 제7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삭제하고 “지방세법상 경감율 100분의 50을 적용”
- 감면조례 중 주택 범위적용 명확화
 - 안 제11조와 안 제14조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
- 신용보증재단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 명확화
 - 안 제15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 하여 신용보증재단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 제외 명시함
-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8조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
- 사치성재산 감면배제규정 정비
 - 안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사치성재산에 대한 일괄 감면배제 규정을 안 제25조 보칙에 신설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등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급기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수용한 내용이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는바,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0 호
----------	---------

제출연월일 : 2009.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9.12.31)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감면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함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이관 예정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폐지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우리구 감면실효성 없음

나. 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 중 감면실효성이 미미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5조)

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세법」상 경감율 100분의 50이 적용되도록 함 (안 제8조)

라. 감면조례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1조 및 제14조)

마. 신용보증재단의 감면대상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 제외를 명시함 (안 제15조)

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율이 1,000분의 1로 인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세율을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적용함 (안 제18조)

사.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을 신설하여 개별조문에서 각각 규정하던 내용을 정비함 (안 제25조)

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함.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자. 조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제2조)

차.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입법예고('09.10.15 ~ 11.4)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에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주 및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써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23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 가. 특급호텔 : 20%
 -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5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제26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 전화 번호	
	④ 주 소				
감면 대상	⑤ 감면대상 내역	종 류	면 적(수 량)		
	⑥ 소 재 지				
감면 세액	⑦ 감 면 세 목		⑧ 과세연도	⑨ 기 분	
	⑩ 과세표준액		⑪ 감면구분		
	⑫ 당초결정 세 액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⑭ 감 면 신 청 사 유					
⑮ 관 계 증빙서류					
<p>「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p>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m²),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장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u>영등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영등포구세</u> <u>의</u> ----- ----- ----- ----- ----- -----.</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u>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u>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춘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 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 ----- ----- ----- -----.</p>
<p>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u>」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u>운영하는</u>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u>제31조에 따른</u> ----- ----- <u>설치·운영하는</u> ----- ----- ----- -----.</p>
<p>제4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 제2조제 8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2.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u></p> <p>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u>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u></p> <p><u>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u></p> <p><u>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u></p> <p>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p> <p>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7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4.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2. -----제16조에 따라 -----</p> <p>3. -----제40조에 따라 -----</p> <p>4. -----제6조의 따라 -----</p> <p>제8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9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0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u>제2조제13호에 따른</u> ----- ----- 제32조 ----- <u>에 따라</u> ----- ----- ----- <u>제45조에 따라</u> ----- ----- -----.</p> <p>② ----- <u>제2조제7호에 따른</u> ----- ----- 따라 ----- ----- ----- ----- <단서 삭제> -----</p>
<p>제10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주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p>	<p>제11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u>제3조에 따른</u> ----- ----- ----- <u>제6조에 따른</u> ----- ----- ----- 따른 ----- -----</p>

현 행	개 정 안
<p>안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 ----- ----- -----</p>
<p>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따라 ----- ----- ----- ----- 부동산에 ----- ----- ----- ----- ----- ----- -----</p>
<p>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 ----- ----- 1. ----- ----- 해당 ----- ----- -----</p>

현 행	개 정 안
<p>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2.----- ----- ----- 해당 ----- ----- -----.</p> <p>② ----- ----- 제20조에 따라 ----- ----- ----- ----- -----.</p>
<p>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따라 ----- ----- ----- ----- -----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p>
<p>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제63조에 따라 ----- ----- ----- 부동산에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 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삭 제></p>
<p>제1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부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삭 제></p>
<p>제19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분의 1.5를 적용한다.</p>	<p>제1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제5조에 따라 ----- 해당 ----- ----- 「지방세법」 제188 조제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② (생략)</p> <p>제23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p> <p>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p> <p>가. ~ 나.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2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따른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p> <p>1. ----- ----- ----- 따른 ----- ----- 해 당연도 ----- -----</p> <p>2. ----- ----- 해당 연도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제2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u>‘의한’→‘따른’</u> <u>‘의하여’→‘따라’</u> <u>‘~의 규정에 의한’→‘~에 따른’</u> <u>‘~의 규정에 의하여’→‘~에 따라’</u> <u>‘당해’→‘해당’</u> <u>‘당해연도’→‘해당연도’</u>